

공공공간에 대한 소수자의 권리를 위한 시론 거리노숙인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중심으로

A Preliminary Study on Minority Rights to Public Space:
Focusing on ‘the right to the city’ for rough sleepers

김준호*

공공공간 및 공공성 담론은 철저하게 다수자 중심으로 구성된 산물이다.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는 끊임없이 공공공간으로부터 배제를 당해 왔는데, 인권이나 시민권, 주거권 등과 같은 기존의 권리 담론들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개념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권리 행사의 주체에 소수자는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간을 협소한 개념으로 바라봄으로써 공공공간에 대한 전유라는 차원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새로운 패러다임의 권리 담론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에 필자는 ‘도시에 대한 권리’를 그 대안으로 제시한다. ‘차이에 대한 인정’에 기반한 ‘도시에 대한 권리’는 혼종적 공공공간을 가능케 하며, 더 이상 ‘다름’을 ‘틀림’으로 치환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공공공간의 소수자들이 ‘연대’라는 전략적 도구를 통해 ‘도시에 대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주요어: 공공공간, 공공성, 소수자, 거리노숙인, 도시에 대한 권리

1. 들어가며

최근 국내의 여러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근대적 이성 중심 사고

* 경희대 지리학과 석사과정 졸업(junhokim0601@gmail.com)

의 탈피라는 맥락 속에서 소수자(minority)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포함하는데, 첫째는 소수자의 의미와 관련된 논의로 소수자 개념 및 소수자 정체성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소수자의 유형과 범주는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에 관해 다루고 있으며(김하수 외, 2008; 전영평, 2009; 윤수중, 2009), 둘째는 소수자 운동 관련 논의로 소수자들의 운동이나 소수자를 위한 다수자의 운동을 각각 해석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문성훈, 2005; 윤수중, 2005). 마지막은 소수자의 권리와 관련된 논의로, 권리 확보 주장의 근거, 즉 소수자들이 겪는 사회적 배제와 차별에서부터 바람직한 권리 형성방향 및 정책적 대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김홍수영, 2005a; 윤수중, 2009; 장미경, 2005; 윤인진 외, 2006). 본 연구는 지리학, 사회학, 행정학, 철학, 사회복지학 등을 가로지르며 수행되어 온 수많은 소수자 관련 논의 중 ‘소수자의 권리(minority rights)’, 특히 ‘공공공간(public space)’에서 요구되는 소수자의 권리 측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공공공간은 ‘공적’인 공간이다. 즉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고, 마음대로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바로 공공공간이다. 적어도 개념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시대를 초월하여 보편 타당한 공공의 가치를 내세우는 공공공간에서, 과연 소수자와 다수자의 경험은 동일한가? 가령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 중 하나인 ‘노숙인’, 특히 일상의 대부분을 거리에서 보내는 ‘거리노숙인(rough sleepers)’이 공공공간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다른 시민들의 그것과 똑같은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 질문을 갖는다.

- ① 결코 ‘누구에게나 열린’, 혹은 ‘중립적인’ 공간이라 할 수 없는 공공공간, 그리고 그 안에 담지된 공공성(publicness) 담론은, 기본적으로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가?
- ② 사회적으로 구성된 공공성 담론은 공공공간의 소수자에게 어떻게

작동하는가? 즉, 소수자의 사회적 위치성(positionality)과 공공성 담론이 결합한 결과는 공간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 ③ 결국 공공공간의 소수자들에게는 어떠한 권리가 필요하며, 이는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상의 질문에 대한 구체적 수준의 대답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거리노숙인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집과 같은 ‘사적공간(private space)’ 없이 모든 생활을 공공공간에서 영위해 나가는 거리노숙인¹⁾은 공공공간과 소수자의 역학 관계, 그리고 공공공간에 대한 소수자의 권리를 논의하는 데 적절한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거리노숙인의 위치성과 공공성 담론이 결합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공공간에서의 배제와 포섭 및 제재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에게 필요한 실질적 권리 담론, 즉 ‘도시에 대한 권리’를 새롭게 조명하려는 것이다. 결국 공공공간과 소수자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공공공간에 대한 소수자의 권리를 제언하는 데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있다.

2. 공공공간 및 공공성 담론에 대한 고찰

공공공간(public space)은 공공성(publicness) 담론에 의해 추동되며, 반대로 시민사회의 공공성은 여론, 공공, 개방성 등과 관련된 공공영역(public sphere)²⁾이 강조된다(Habermas, 2001). 이는 공공성과 공공공간이 상호구성

1) 대부분의 노숙인은 쉼터 및 시설과 같은 임시거주시설과 거리를 오가며 생활하기 때문에 “노숙인은 전적으로 공공공간에서만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는 명제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쉼터 및 시설 노숙인과 구분되는 범주로서 거리노숙인을 상정하고 이들만을 주요 고려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모든 생활을 공공공간에서 영위해 나가는 거리노숙인”이라고 표현하였다.

2) 보통 비(非)지리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공간’은 물리적 공간에 한정된다. 따라서 물리적·지리적 개념이 아닌 사회문화적 의미체계가 결합된 추상적 개념이 필요

적 관계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공공공간에 대한 논의는 공공성에 대한 사유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공공성은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형성되는가?

일반적으로 공공성의 개념은 너무 포괄적이고 복잡하여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인문사회과학의 거의 모든 분야가 공공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각각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접근방법이 다르고, 따라서 공공성은 줄곧 다의적으로 이해되어 왔기 때문이다(백완기, 2007). 특히 공공성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공(公)과 사(私)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라는 화두가 주요 논쟁거리로 부상하면서, 학자들 간, 그리고 학제 간 접근 방식의 차이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주로 고찰할 부분은 “공공성은 무엇인가?” 혹은 “공공공간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존재론적 차원의 질문이 아니라, 공공공간, 그리고 공공성 담론이 (그것을 무엇으로 정의하든) 형성되는 과정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공공성 담론과 공공공간은 어떤 성격을 갖는지에 관한 것이며, 이를 각각 ‘유동성’, ‘구분과 제재’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공공공간과 공공성은 ‘공적인 것(the public)’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는 감춰지지 않고 드러난 것(가시성),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이 개방되어 있는 것(개방성), 부분이 아닌 전체(집단성)라는 속성을 갖는다(이승훈, 2010). 즉 무엇을, 그리고 어디까지를 ‘공(公)’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드러나고, 개방되며, 전체적이어야 하는’ 범주가 달라진다는 것인데, 바로 여기서 공공공간과 공공성 담론 형성 과정의 특징인 유동성(flexibility) 문제가 제기된다. 다시 말해 ‘드러나고, 개방되며, 전체적이어야 하는’, 혹은 ‘드러

할 때는 공간이 아니라 ‘영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하는데, 사회철학자인 하버마스가 ‘공공공간’이 아닌 ‘공공영역’이라 표현한 것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공공공간’은 사회공간론적 관점에서의 ‘공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물리적 공간뿐 아니라 사회·문화·경제·정치 등이 관통하고 있는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공공공간’을 뜻한다. 요컨대 ‘공공영역’ 혹은 ‘공론장’ 등의 의미를 포함할 뿐 아니라, 이들 용어에는 상대적으로 결여된 개념인 ‘물리적·지리적 공간’으로서의 ‘공공공간’ 역시 아우르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날 수 있고, 개방될 수 있으며, 전체적일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대나 사회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다분히 맥락의존적 성격을 갖는다. 예를 들어 희랍과 로마시대의 공공공간은 (어디까지 공공공간으로 간주할 것인가를 떠나) 여성과 생산을 담당한 노예계급을 제외한 소수의 시민들에게만 '열린' 공간이었으며, 따라서 그 시기의 여성이나 노예는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는 대상으로 존재했다. 그리고 중세시대 말의 서양에서는 부유한 시민사회와 그 구성원들에 한정하여 공공성이 통용되었다. 이처럼 공공성은 유동성을 본질로 하는 가치이며(윤해동, 2010), 그래서 공공성 담론은 한국적 상황에서 작위적으로 사용되어오곤 했다(이주하, 2010). 다시 말해, 공공성 담론은 유동적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선형적으로 주어지고 고정된 것, 그래서 보편타당한 본질과 가치를 지니는 개념처럼 전략적·도구적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공성 담론이 전략적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어떤 문제를 갖는가? 이는 공공성 그 자체가 갖는 권력적 속성, 즉 '구분과 제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희랍과 로마시대, 혹은 중세시대 말의 공공공간 담론을 보면 알 수 있듯, 공공성은 사람을, 그리고 집단을 '구분'짓는다. 즉 하나의 공동체나 사회의 절박한 문제를 서로 교환하고 사회 구성원의 자유로운 일치를 가능케 하기 위해, 그리고 절박한 문제와 부차적 문제를 구분하고 사회에 부딪친 위험을 공동으로 극복하기 위해 공공성은 '나'와 '너', '우리'와 '그들', '적'과 '동지'를 각각 구분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공속성(共屬性)을 의식할 수 있게 한다(윤해동, 2010). 다시 말해, 각 시대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권력(power)은, 스스로의 체제를 더욱 견고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혹은 강화하기 위해) '내부의 전체성과 통일성'을 강조하고 이에 순응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자들은 '체제의 외부인'이자 '반(反)사회적 대상'으로 구분함으로써 '타자화(othernization)'시킨다. 이렇게 시스템의 '안'과 '밖'을 경계 짓게 되면, 사회 구성

원들은 ‘안쪽’에 해당하는 주류가 되기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체제로부터 부여된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분된 경계를 지속시키는 데 끊임없이 일조한다. 즉 ‘너’, ‘그들’, ‘적’, ‘밖’이라는 범주가 있어야만 그들 스스로가 ‘나’이자 ‘우리’, 그리고 ‘동지’이자 ‘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형성된 공공성 담론을 해체시키려 하지 않는 것이다. 반대로 동화의 전략에서 이탈하게 된, 즉 경계의 밖에 서게 된 사람들은, 주류에 편입되지 못한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가치절하를 내면화하게 된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렇게 되기를 경계 ‘안’에 있는 자들로부터 ‘강요’당한다. 게다가 주변화(marginalization)된 개인이나 단체는 단지 ‘구분 짓기’를 당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공공간으로부터 다양한 방식의 ‘제재’를 받는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를 찾을 수 있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을지로입구역 내 만남의 광장 개발공사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만남의 광장은 서울역, 회현역, 영등포 일대와 더불어 서울에서 거리노숙인이 가장 밀집해 있는 대표적 공간이다. 그러나 서울메트로는 지하상가 개발의 일환으로 작년 11월부터 만남의 광장을 번듯한 공연장, 그리고 카페와 같은 상업시설들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이곳에서 생활하던 150여 명의 거리노숙인들은 주변으로 밀려났고, 종교단체가 광장에서 급식을 나눠주던 모습도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다. 게다가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에는 을지로입구역 지하통로를 폐쇄하는 방안까지 추진함에 따라 역내에 노숙인들이 상주하는 자체가 원천 봉쇄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을지로입구역 한가운데에는 여전히 “시민을 위한 공간입니다”라는 문구가 보란 듯 걸려있다. 즉 거리노숙인은 ‘평범한’ 시민들과 ‘구분’되는 경계 밖 존재로 간주됨으로써, ‘시민을 위한 공간’인 만남의 광장에서 ‘배제’되어 버리는 ‘제재’를 당했던 것이고, 여기에 동원된 논리가 바로 공공의 이익, 즉 공공성 담론임은 자명하다. 요컨대 공공성 담론은 ‘구분과 제재’라는 내적 속성을 기반으로, 다분히 전략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이자 도구로 제시되어 왔으며, 공공공간 내의 다양한 주체들에게 서로 다른 의미이자 권력으로 행사되어

왔다.

지금까지 공공성 담론의 성격, 즉 ‘유동성’과 ‘구분 및 제재’라는 두 가지 속성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주류사회가 이를 어떻게 전략적 도구로 동원해 왔는가에 대해 더불어 살펴보았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소수자는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성(positionality)을 갖는지, 즉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생산’되는지, 그리고 특정 지점에 위치지어진 소수자는 공공성이 담지된 공공공간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제재를 받는지, 거리노숙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3. 공공공간과 거리노숙인³⁾

1) 거리노숙인의 위치성

소수자는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구성’되고 ‘위치지어’진다.⁴⁾ 거리노숙

3) 공공공간과 거리노숙인 간 관계를 보이고 있는 3장의 전반적 내용은, 김준호 (2010a)의 연구를 토대로 작성되었음.

4) 단어 자체의 의미로만 본다면 소수자는 수적으로 적은 집단이다. 하지만 여성은 남성보다 수적으로 많지만 통상 소수자라고 여겨지며, 남아프리카에서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가 시행되던 시절, 인구의 10%도 되지 않는 백인이 다수자이고 흑인이 소수자였다(윤수종, 2009). 그렇다면 과연 소수자는 누구인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소수자를 설명하고 있다(전영평, 2006).

“큰 사회 안에서 문화적·민족적·인종적으로 구별되는 특수집단. 한 사회 안에서 지배집단에 종속해 있는 집단을 가리키며 그 규모보다는 종속성이라는 성격이 소수 집단”

요컨대 소수자 개념은 수적 규모의 적음보다는 ‘구별성’, ‘차별성’, ‘종속성’ 등의 요인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력의 열세로서 소수자를 의미한다. 즉 권력관계에서 지배 종속 관계를 일정하게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윤수종, 2009). Dworkin and Dworkin(1999)에 따르면 소수자를 정의하는 데는 네 가지 조건, 즉 ① 식별가능성(identifiability), ② 권력의 열세, ③ 차별적 대우의 존재, ④ 소수자 집단성원으로서의 집단의식이 필요하다(윤인

인의 경우 역시 그러한데, 특히 이들은 타 소수자 집단과 구별되는 다소 독특한 위치성(positionality)을 지니고 있다.

흔히 사회적 소수자로 간주되는 집단, 예컨대 여성, 아동, 노인, 외국인 노동자 등은 비교적 뚜렷한 개념적·현상적 범위를 갖는다. 그러나 이들과 달리 거리노숙인은 굉장히 가변적이다. 멀쩡했던 한 집안의 가장이 사업부도로 인해 어느 순간 갑자기 거리노숙인으로 전락하기도 하며, 거리노숙을 전전하던 사람이 어떤 기회를 통해, 혹은 끊임없는 자활 노력을 통해 거리노숙을 탈피함으로써 다시 주류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즉, 사회구성원 누구나 거리노숙인이 될 수 있고, 반대로 거리노숙인 누구나 주류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요컨대 다른 소수자 집단에 비해 주류사회(혹은 다수자 집단)를 넘나드는 장벽이 비교적 낮은 집단

진 외, 2006). 여기서 식별가능성이란 어떤 신체적, 문화적 특징에 의해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를 갖는다는 것을, 권력의 열세란 경제력, 사회적 지위, 정치권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차별적 대우의 존재란 소수자 집단의 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것을, 소수자 집단성원으로서의 집단의식이란 몇 사람의 공유된 생각에서 시작하더라도 차별적 관행이 반복되면 전체적인 연대의식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윤인진 외, 2006). 한편 Douglas(1966)에 따르면 인간 사회 질서의 근본에는 순수와 위협으로 대비되는 상징체계가 존재하는데 질서가 부여된 순수라는 상징체계와 그 외부에 존재하는 오염된 대상인 위협이라는 상징체계가 있고 이는 정돈되고 절제하는 ‘우리’와 일탈적이고 파괴적인 ‘타자’를 표상하며 여기서 ‘타자’의 개념이 소수자에 해당된다(유명기, 2004; 전영평, 2006에서 재인용). 장미경(2005)은 특히 소수자를 ‘표준적인 인간과는 거리가 먼 주변인’으로 규정하면서, 주변성과 타자성, 일탈이 극대화되면 범법자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다수자의 지배에 대립하는 개념으로서 수적으로는 다수자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이처럼 소수자란 태생적·생물학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후천적·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탈근대적 개념인 것이고, 따라서 소수자의 정체성은 고정적 성격 보다는 유동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표준화 및 통일성을 지향하는 ‘근대적 속성’에 부합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소수자들인데, ‘탈근대화’를 통해 근대적 요소가 해체되고 그 경계가 흐려짐에 따라, 즉 ‘근대적 산물의 탈근대화’로 인해 수면 위로 드러나고 강조되기 시작했던 개념이 바로 소수자인 것이다. 따라서 소수자 유형 중 하나인 거리노숙인 역시 사회적·문화적·정치적 ‘맥락(context)’에 따라 ‘구성’되고, 특정 지점에 ‘위치 지어진’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 바로 거리노숙인이며, 따라서 모호한 사회적 위치성을 갖는다. 가령 국민(혹은 시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사회적 위치가 비교적 명확하고 따라서 내부와 외부가 확실히 구분된다. 그러나 거리노숙인의 경우 국민 혹은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위치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분명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서울의 시민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혹은 때로는) 이들의 범주에서 벗어난 존재로 취급받고, 따라서 이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받기도 한다.⁵⁾ 결국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여기에 위치한 것도 아니고 저기에 위치한 것도 아닌 경계에 걸쳐있는 존재로서 사회에 위치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위계급(underclass)’⁶⁾으로서의 거리노숙인은 차이보다 이상적 통합을 우선시하는 자본주의 공동체에서 배제의 대상으로 간주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화폐의 가치는 절대적이다. 그리고 도시는 이러한 자본주의 담론이 가장 응축되어 있는 공간이다. 다시 말해 (국내 거리노숙인의 대부분이 도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⁷⁾) 거의 모든 거리노숙인들은 ‘자본주의 시스템이 장악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듯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가와 노동자’,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생산자와 소비자’ 등의 구도로 전개된다. 그리고 어느 쪽이 됐든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적어도 자본주의 시스템에 순응하고 또 그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거리노숙인은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본주의 사회의 불청객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

5) 가령 거리노숙인의 경우 주소지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따라서 이들은 국가로부터 가장 기초적인 혜택도 받을 수 없으며 투표의 권리도 의무도 아무것도 없다(정규식, 2009).

6) 하위계급이라는 용어는 Myrdal(1962)이 거시적 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기술하기 위해 처음으로 사용된 것으로, 세대를 거쳐 대물림되는 빈곤, 공공복지에의 의존, 실업과 같은 경험 등을 기술하는 데 이용된다 (Valentine, G., 2009).

7) 우리나라 노숙인의 절대다수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노숙인의 60% 이상이 서울의 노숙인이며, 쉼터 이용 노숙인 중 서울의 쉼터를 이용하는 노숙인은 전체의 2/3에 이른다(남기철, 2009b).

본주의 사회의 ‘타자’로 존재하며, 이는 결국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위치 지어진’ 결과다. 물론 자본주의 이외의 사회체제에서도 거리노숙인은 타자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자본주의가 담론양식에서 헤게모니를 갖게 되면서 발생한 현 사회구도에서 경쟁 체제와 국가의 역할이 더욱 공고히 되었고, 그 결과 ‘바람직한 국민’, 그리고 ‘바람직한 시민’의 상(像)이 전략적으로 생산되었으며, 동시에 강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바람직한 시민’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즉 ‘적어도(그리고 가능한) 노동인구⁸⁾와 소비자로 존재하여 자본주의 시스템에 일조하라는 사회적 요구’에 어긋나는 거리노숙인들은 더욱더 주변화 된 존재로 사회 내에 위치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담론은 거리노숙인을 사회의 전체성과 통일성을 해치는 존재로 규정했고, 따라서 배척하고 제재해야할 대상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른바 주류사회의 이데올로기적 담론의 생산, 즉 전략적인 ‘거리노숙인 위치 짓기’가 자본주의에 의해 더욱 추동되고 있는 양상이다. 거리노숙인의 위치성(positionality)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거리노숙인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보면, 이는 보다 극명하게 드러난다.

거리노숙인의 이미지가 형성되는 일차적 경로는 시민들의 ‘직접 경험’이다. 즉, 시민들이 거리노숙인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직접적 경험의 과정을 통해 그들에 대한 이미지가 구축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경험한 상당수의 사람들은 거리노숙인의 부정적 이미지, 예컨대 ‘노숙인은 비난 받을 만하다’, ‘노숙인은 더럽고 불결하다’, ‘노숙인은 알코올 중독자다’, ‘노숙인은 위험하다’ 등의 이미지로 그들을 낙인(stigma)찍는다. 물론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거리노숙인들이 분명 있다. 그러나 모든 거리

8) 실제로 상당수의 거리노숙인들은 노동을 하고 있다. 단지 변듯한 기업이나 공장 과 같은 공식적인 영역에서의 노동이 아닐 뿐이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시장노동만을 존중하는 개념이 되어 버렸으며(김홍수영, 2005a), 따라서 거리노숙인의 노동은 ‘온전한’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평가절하 된다. 결국 거리노숙인들은 실제로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적 노동인구’로 분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노숙인들이 그런 건 아니다. 시민들이 경험한 ‘사회악(惡)과도 같은’ 거리 노숙인은 전체 노숙인 중 일부일 뿐이다. 요컨대 ‘대표성’에 문제가 있을 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두 명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수의 시민 들이 체험한 직접 경험의 사례는 무엇인가? 왜 시민들은 질이 좋지 못한 노숙인들‘만’ 보고, 듣고, 느끼게 되었는가? 왜 더럽고 게으르며, 잠재적 범죄자처럼 보이는 노숙인들‘만’ 발견되었는가? 이는 평범한 거리노숙 인, 즉 시민들의 기준에서 표준 행동양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노숙인 들은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하고 있는 노숙인,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머무는 노숙인, 잠을 자고 있지 않는 상태의 노숙인, 차림새가 말 끄만 노숙인 등은 ‘숨겨진 노숙인(hidden homeless)’으로 치환되고, 따라서 시민들의 눈에 밟히지 않는 존재가 된다. 요컨대 주류사회가 권장하는 시스템에 순응하는(혹은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리노숙인들은 시민들 의 눈에 ‘노숙인이 아닌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 들은 특별한 의식 없이 이들을 지나쳐간다. 즉, 자본주의 사회가 규정한 표준 행동양식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노숙인들‘만’ 시민의 눈에 비춰 지고 체험되는 것이며, 이렇게 체험된 바는 결국 시민들의 ‘거리노숙인 에 대한 이미지’로 자리 잡는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가 거리노숙인 전체를 대표하게 된다. 요컨대 노숙인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들’이 아니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만’ 노숙인으로 간주되는 것이 다. 결국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의 경계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혹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리노숙인이 그렇지 않은 노숙인보다 양적으로 더 많지는 않은가”라는 화두 자체가 제기될 수조차 없도록, 이미 자본주의 사회는 ‘거리노숙인은 곧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혹은 그런 잠재력을 가진 자’로 규정한 채, 여기에 해당되는 자들만 을 전략적으로 생산 및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처음부터 거리노숙인은 맥락에 따라 ‘구성된’ 개념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구성된 거리노숙인의 위치성이, 앞서 언급했던 공공성 담론과 결합하게 되면 그 결과는 공간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2) ‘지배의 공간’과 거리노숙인

남기철 교수가 지적한대로 자본주의 시스템은 ‘의자 뺏기 구조’를 양산한다. 우리나라의 빈곤문제와 저렴주거 부족상황은 노숙인 문제를 늘 상존하도록 만드는 기제가 되고 있는데, 즉 한 사회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의 수와 전체 필요자 수의 차이만큼은 ‘의자’에 앉지 못해 누가 노숙을 하게 되든 시장경제 속 구성원 중 일부는 노숙생활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게임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남기철, 2009a). 따라서 거리노숙인에게 얼마나 적절한 수준의 주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 못지않게, 노숙인들이 거리에서 생활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진중한 고찰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필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공공공간에서 거리노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지하듯 공공공간에 담지된 공공성은 ‘누구에게나 열린 중립적인 공간’으로서의 공공공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오로지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이자 ‘시민’인 사람에게만 공간을 허용하는 배타적 공공성으로 개념화 되어 있다. 물론 거리노숙인은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공공간에서의 거리노숙인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저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래서 부정되어야만 하는 존재일 뿐이다. 이들은 주류사회, 그리고 주류담론이 장악한 공공공간이 요구하는 특정한 방식과 규칙,⁹⁾ 그리고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공간으로부터 공공성을 보장받지 못한다. 오히려 공공성의 미명 하에 추방되고 격리된다. 결국 거리노숙인에게 공공공간은 이질적 공간이자 주류사회가 장악한 ‘지배의 공

9) 소유자가 취향에 따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유재와 달리 공공재는 ‘올바른 이용방식’에 대한 다소 획일적인 규칙들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하철과 철도역사는 여행객을 위한 공간으로, 거리는 통행을 위한 공간으로 ‘기능화’되어 있으며, 사람들이 이 공간을 각 기능에 부응하여 사용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김홍수영, 2005b).

간(space of rule)'일 뿐이다. 이런 맥락에서, 어떤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보호의 공간(space of care)'이 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공간(space of fear)'이 될 수도 있다는 존슨(2005)의 지적은 거리노숙인들이 살아가는 공공공간에서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역 광장의 벤치에서 시민 한 명과 거리노숙인 한 명이 나란히 잠을 자고 있다고 했을 때, 과연 사람들은 이 둘을 똑같이 볼 것인가? 즉, "공공공간에서 잠을 자면 안 된다"라는 사회적 명제는 실제로 "적어도 거리노숙인 만큼은 공공공간에서 잠을 자면 안 된다"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음의 사례는 '지배의 공간'으로서 공공공간이 거리노숙인에게 가하는 권력과 제재를 잘 보여준다.

지난 2005년 1월, 서울역 거리노숙인 2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¹⁰⁾ 이에 노숙인과 경찰 간 실랑이가 벌어졌고, 바로 며칠 뒤에 서울시는 '역사 내 노숙인 단속 및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표 1> 참조). 예방의 목표는 물론 거리노숙인 '추방'이었다. 서울시가 단속의 근거로 내세운 노숙인 문제점의 주요 골자는 ①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고, ② 환경을 저해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안전 저해의 사례로 며칠 전 발생했던 '노숙인 사망으로 인한 (노숙인들의) 역사 내 난동사건'을 비롯하여 노숙인이 야기시킨(혹은 노숙인이 야기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사고들이 언급되었다. 더불어 예방 대책 뒤에는 "뉴욕지하철 노숙자 실화 화재사건 관련 개황(요약)"이라는 또 하나의 자극적인 사례가 첨부되었다. (당시 서울역사 측의 책임론이 거론되었을 만큼) 의문스러웠던 거리노숙인의 죽음이나 노숙인들이 시민으로부터 받았던 피해 사례는 철저히 배제된 채, 그들을 추방 및 격리시킬 근거가 되는 사례만 선별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서울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하여, 그리고 '공공공간'의 질서를 위하여 거리노숙인을 이에 대립되는 지점에 '위치시킴'으로써 공간으로부터의 배제를 합리화하였다. 또한 '보호시설 입소

10)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50123095416211&p=yonhap>.

<표 1> 역사 내 노숙자 단속 및 예방 대책 관련 보도자료

역사 내 노숙자 단속 및 예방 대책

최근 경기 침체 및 동절기 한파 등으로 역사로 유입되는 노숙자가 증가하여 지하철 이용고객에게 불편 및 불쾌감을 주고 또한 7호선 방화사건 및 국철 서울역 노숙자 난동 사건 등 역사 안전에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시행코자 함

□ 문제점

○ 안전 저해

- 2003.6.26(목) 회현역 승강장에서 노숙자가 40대 여성을 밀어 숨지게 함
- 2004.12.21(화) 국철 구로역 승강장 김모(21.여) 씨 등 남녀 2명을 때밀어 부상
- 2005.1.3(월) 노숙자로 추정되는 신원불상자가 7호선 열차 내 방화
- 2005.1.22(토) 국철 서울역 노숙자 사망으로 인한 역사 내 난동사건
- 동절기 개방통로에서 취사, 보온 등 화기 사용 시 화재발생 우려
- 흑한기 노숙자 동사 가능성 등

○ 환경 저해

- 음주 및 음식물 반입과 방뇨로 인한 악취 및 쓰레기 문제
- 의복을 갈아있지 않는 등으로 노숙자에게 악취 발생
- 직원 감시를 피해 개집표기 무단출입 후 열차 승차로 고객 불편 발생 등

□ 대책

○ 역사 감시 활동 및 순회점검 강화

- 역 간부 및 공익근무요원 역사 순회 점검 1일 20회 이상 실시
- 당직자 순회점검 강화
- 노숙자 발견 시 유관기관(구청, 경찰 등)에 즉시 조치요청

○ 상습 노숙지역 물청소 실시

- 방뇨로 인한 악취해소 및 물청소로 인한 노숙사전 차단 효과

○ 관계기관(서울시, 구청 등)의 지속적인 단속 요청

○ 서울시의 단속강화 및 강제추방 등 행정조치 필요

- 역사 밖으로 강제추방 조치 가능토록 법적처벌 근거 필요(인권문제 해소)
-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중인 보호시설강제수용 방안 필요
- 노숙자 문제는 공사차원의 단속보다 정부차원의 노숙자 자립 프로그램 추진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근본문제 해결이 바람직하다 사료됨

출처 : 서울특별시(2005).¹³⁾

권장'을 추방의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써 배제의 기제뿐 아니라 특정 공간으로의 포섭 기제까지 갖추었다. 이는 보호시설과 같은 사회복지 체계가

불필요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거리노숙인이 계속 거리에서 생활하도록, 그래서 그 결과가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방종하자는 의미 또한 아니다. 다만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전략이 ‘복지’라는 이름으로 은폐된 채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지적하는 것이다. 즉 강요에 가까운 보호시설 입소 권장은, ‘적어도 이에 순응하는 노숙인들만이 사회로부터 최소한의 동정과 배려를 받을 가치가 있는 대상’이라는 지배논리가 깔려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¹¹⁾ 결국 배제의 기제와 포섭의 기제가 공존하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주류사회는 ① 공공공간으로부터 거리노숙인을 추방시킬 수 있고, ② 노숙인의 인권을 고려한 인도적 대책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으며,¹²⁾ ③ 이동성이 강한 노숙인들을 지배사회의 감시 아래 뚝으로써 이들을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④ 지배사회가 권장하는 공간(쉼터, 시설 등)으로 그들을 포섭함으로써 자본주의 시스템에 편입시키려는 전략이다. 요컨대 (네 가지 효과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주류사회에 의해 실시되는 공간적 재배치 전략이며, 이로써 그들의 자본주의 시스템과 ‘지배의 공간’은 더욱 더 견고해진다.

한편 공간으로부터의 배제와 포섭은 국가 차원의 메가 이벤트 등이 열릴 때 더욱 심해진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시행된 ‘거리노숙자들에 대한 특별보호대책¹⁴⁾’이 대표적 사례다. 당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지하철역 등 기존 거리노숙인 밀집지역과 거리노숙인이 집

11)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숙인들이 거리생활을 하는 데 있어 시민들이 받는 피해, 그리고 노숙인들이 공공공간으로부터 받는 제재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분명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언급될 ‘해보자모임’ 사례를 통해 그 타협점을 찾아볼 것이다.

12) 즉, 아무런 대책 없이 공공공간에서 거리노숙인을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더 나은 ‘대안공간’이 마련되어 있음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13) http://www.seoul.go.kr/seoul/citynews/newsdata/1217092_8736.html.

1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0187542>.

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장 주변지역 및 공원, 관광호텔 월드인 등을 중심으로 거리노숙인을 단속하였다. 또한 월드컵 기간 중 시설입소를 거부하는 잔존 노숙인에 대해 300명씩 4박 5일 동안 민간시설에 위탁하여 특별 연수를 실시하고, 노숙금지구역 내에서 무료급식을 중단했으며, 이들을 타 지역 또는 실내 배식으로 유도해 거리노숙인 집중을 예방하려고 했다. 물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이 발표되고 시행되는 동안 이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게 등장했지만, 서울시는 그대로 추진하였다. 요컨대 거리노숙인은 ‘(적어도 월드컵 기간만큼은 더더욱) 공공공간에 있으면 안 될 존재’, ‘(국가 위상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은폐해야 될 존재’로 치부되었고, 따라서 온 국민이 하나 되어 붉은 물결을 이루며 응원할 때 거리노숙인은 ‘국민’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었다. 작년에 개최된 ‘G20 서울 정상회의’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거리 환경 정비를 통해 거리노숙인을 은폐하고자 하는 전략적 공간배치가 지속적으로 이행됐다. 이처럼 월드컵이나 정상회의 등을 앞둔 시기에 거리노숙인은 특히 더 격렬하게 배제당하고, 또 포섭 당한다. 자본주의 담론이 글로벌 차원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거리의 노숙인은 보이기 부끄러운 존재로 위치 지어졌고, 이는 공공성의 이름 아래 공공공간으로부터 그들을 꾸준히 배제 및 포섭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리노숙인은 반(反)자본주의적 속성을 지닌 대상으로 위치 지어졌으며, 현재의 공공성 담론 역시 자본주의라는 막강한 이데올로기가 개입함으로써 작위적으로 형성되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의 결합 결과가 공공공간에 드러난 형태는 (다양한 방식과 강도의) 공간으로부터의 배제와 포섭이었다.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노숙인들의 거리 생활을 ‘방치’하지는 것이 아니다. 거리노숙인들로부터 시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간과하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현재의 논의들이 표면적·실용적 수준에서만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즉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이라는 존재를 부정한 채 이들을 어떻게 ‘구호’할 것인가에만 관심이 쏠려있는 현 체제를 비판하고, 보

다 근본적인 부분¹⁵⁾(혹은 그동안 논의되었던 또 다른 부분)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요컨대 자본주의 담론은 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통일성을 강요함으로써, ‘다름’을 ‘틀림’으로 치환시켰고, 주체들 간 ‘차이’를 ‘차별’적으로 용인했다. 그리고 그 결과 거리노숙인과 같은 소수자는 공공공간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됐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거리노숙인에게 절실한 권리 담론은 무엇인가? 어떻게 권리 담론을 구성할 것인가?

4. 거리노숙인의 ‘도시에 대한 권리’

1) 인권, 시민권, 주거권의 한계

현존하는 수많은 권리 담론들은 거리노숙인이 공공공간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유용한 것인가? 거리노숙인에게 부여되어야 한다고 간주되던, 그리고 자본의 횡포에 맞설 수 있는 대항담론이라고 여겨지던 인권과 시민권, 그리고 주거권은 과연 공공공간의 권력성으로부터 거리노숙인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가? 바꿔 말해 이들 권리 담론이 (담론 그 자체가 얼마나 타당한 개념적 의미 및 함의를 갖는가를 떠나) 사회적 권력관계와 실제로 결합한 결과는 거리노숙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필자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15) 앞서 ‘의자 빼기 놀이’를 언급했듯, 거리노숙인에게 필요한 권리 담론이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권리’에만 한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거리에서 생활하는 그 자체에 대한 고찰이 더불어 이루어져야만 하며,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노숙인들의 거리 생활’에 집중하여 권리 담론을 서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필자의 주장은 결코 “노숙인들이 거리에서 생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는 차원에서 발로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그들에게 적절한 주거를 제공하는 것은 옳지 않다거나 혹은 부차적인 문제”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그동안의 논의에서 소외되었던 거리에서의 삶 그 자체를 조명해보고 이에 필요한 권리 담론에 대해 고찰해보자는 것이다.

첫째, 위의 권리 담론들은 오히려 실생활에서 거리노숙인을 배제시키는 기제로 작동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인권과 시민권, 그리고 주거권은 관념적으로 인간이나 시민, 혹은 주거인이면 누구나 보유하고 있는 무조건적 권리이지만, 현실 속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할 때가 많다(김홍수영, 2005a). 그리고 이러한 요건들은 철저하게 다수자를 기준으로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김홍수영, 2005a), 거리노숙인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는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었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거리노숙인의 위치성’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 ‘시민’, ‘주거인’은 ‘현 체제에 순응하는(혹은 순응하려 노력하는) 존재’로서의 인간과 시민, 주거인으로 한정된다(김준호, 2010b). 현대 도시에서 이 세 가지 개념은 사회 체제 유지에 공조하는 이들을 지지하며, 동시에 이들에 의해 지지된다. 따라서 시스템의 ‘외부’에 놓인 거리노숙인들은 더 이상 주거인도, 시민도, 나아가 (자본주의 체제의) 인간도 아닌 존재가 된다. 요컨대 거리노숙인은 ‘보편타당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권리’를 부여받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합당한 주체가 아닌 것이다. 오히려 시스템 ‘내부’의 인간이자 시민, 그리고 주거인인 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재를 받아 왔다. 이는 권리 담론이 갖는 자체적 속성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체제에서 실제로 작동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다. 공공공간을 교환가치(exchange value)로 이용해야 한다는 자본주의 사회의 규범은, 사용가치(use value)로 공공공간을 이용하려는 거리노숙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애초부터 거리노숙인은 인권과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간’ 혹은 ‘시민’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류사회로부터, 그리고 공공공간으로부터 끊임없이 배제를 당하는 구조 속에 놓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배제의 정치는 굉장히 합법적이고 인도적이며 또한 타당하게 진행되어 왔다.

세 가지 권리 담론이 갖는 두 번째 문제는 ‘공간’을 편협한 의미로 간주함에 따라 ‘공공공간의 전유’ 차원을 간과하는 형태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 시민들과 달리 거리노숙인들은 공공공간에서 모든 생활

을 영위해 나간다. 이는 비(非)거리노숙인들이 사적공간에서 해결할 일을 거리노숙인들은 모두 공적공간에서 이행해야만 함을 의미하며, 따라서 그들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바로 ‘공간’이고, ‘공공공간’에서 이를 충족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처럼 공공공간에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유(appropriation)¹⁶⁾의 차원에서 공공공간에 접근하려는 그들에게, 현존하는 권리 담론이 주는 함의는 극히 제한적이다. 가령 주거권 담론의 경우, 거리와 같은 공공공간을 주거공간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거리의 노숙인들에게 ‘새로운’, 그리고 ‘적절한’ 형태의 주거를 제공해야 함을 주장할 뿐, 공공공간에서의 생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주거’라는 관점에서 ‘공공공간’은 논외에 해당했기에, ‘공공공간의 전유’라는 차원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다. ‘인간답게 살 권리’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물리적 형태의) 집’은 외치지만, 이것이 ‘공공공간에서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고, 따라서 ‘공공공간에서 살아가는 소수자들이 누려야 할 권리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상의 두 가지, 즉 다수자 중심으로 권리 담론이 설정되어 있다는 문제와 공간을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공공공간의 전유라는 차원을 간과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문제는, 공공공간의 거리노숙인이 인권이나 시민권, 그리고 주거권에 대한 능동적 주체가 되는 것을 끊임없이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거리노숙인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공간적 재배치라는 형태로 극명하게 드러난다. 언뜻 보편타당하며 중립적 개념으로 보이는 인권과 시민권, 그리고 주거권은 사실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 결부되어 실현되어 왔을 뿐더러, 공공공간에서의 일상을 지지할 수 있는 아무런 공간적 근거를 갖지 못한 채 유지되어 왔던 것이

16) 전유(appropriation)는 소유(권) 개념과 구별되며 지배 개념과 대립되는데(김남주, 2000), 자신의 육체, 자신의 욕망, 자신의 시간, 자신의 공간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스스로 장악하고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뜻한다(Lefebvre, H., 2005). 즉 교환가치가 아닌 사용가치로 연결되는 개념으로, 공간을 상품으로 간주하는 개념과 대립된다(Purcell, 2003).

다. 물론 이는 권리 담론 자체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현 체제를 비판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함의와 잠재력을 세 가지 권리 담론은 갖고 있으며, 따라서 권리 담론 일반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이들 권리 담론이 얼마나 타당하고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있는가, 혹은 이들이 어떤 가능성과 함의를 갖는가 하는 문제를 떠나, 적어도 현 사회에 실제로 작동되는 지점을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요컨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권력관계 속에서 이들 권리 담론은 그 잠재력을 발현시킬만한 구체성을 갖지 못한 채 추상적 논의 수준에 머무르는 한계를 갖고 있다. 결국 거리노숙인의 권리 개념에 있어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거리노숙인을 공공공간에서 하나의 주체로 존재케 할 수 있는 담론인 ‘도시에 대한 권리’를 제안한다.

2) ‘도시에 대한 권리’, 그리고 헤테로토피아

돈 미첼(2003)이 지적하듯 거리노숙인에게 공공공간은 야만적(brutal)이며 폭력적(violent)이기까지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 기존의 권리 담론은 큰 효용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68년 프랑스의 철학자 르페브르가 처음 제창했던 ‘도시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the city)’ 개념은 우리에게 중요한 함의를 준다.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는 도시공간에 대한 그의 시각이 그대로 반영된 개념이다. 르페브르에게 도시는 제품(products)이라기보다 하나의 작품(oeuvre)이었는데, 이는 이질적인 도시민들이 공공성에 입각하여 참여하고 교류하는 도시공간, 즉 만남과 차이의 양상블로서의 도시공간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가 도래하면서 도시공간은 사용가치보다 교환가치에 의해 추동되기 시작했고, 따라서 다시 도시를 ‘작품’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이른바 ‘작품(oeuvre)에 대한 권리’를 르페브르는 강하게 주장하게 된다. 또 사적소유권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교환가치보

다 사용가치 중심의 도시공간을 생산할 권리인 ‘전유(appropriation)의 권리’, 그리고 도시거주자들이 도시 공간의 생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참여(participation)의 권리’는 ‘작품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도시에 대한 권리’가 포함하는 주요 골자다(Lefebvre, 1996). 이처럼 ‘작품’, ‘전유’, ‘참여’를 강조하는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는 당시의 프랑스 68혁명과 맞물리면서 대중적 공명을 불러일으켰으며, 최근 들어 다시 한 번 전 세계적으로 학술적·실천적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물론 르페브르 이후 ‘도시에 대한 권리’를 연구하는 여러 소장학자들이 지적하듯,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은 너무 복잡하고 모호하며, 지나치게 유토피아적이라, 이를 구체화하는데 어려움이 따르지만(Purcell, 2002), 그럼에도 현대 도시공간을 사유하는데 있어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차이(difference)에 대한 권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르페브르의 ‘차이에 대한 권리’는 차이 그 자체보다 ‘서로 다를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하는 개념이다(강현수, 2009). 즉 도시가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전유’와 ‘참여’의 권리를 통해 도시공간에 ‘상생’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서로 다를 수 있는, 차이에 대한 권리’가 ‘도시에 대한 권리’에 가장 주요한 속성으로 내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차이’가 존중되는 공간, 요컨대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적 도시공간을 지향하는 것이다. 헤테로토피아는 ‘다른, 낯선, 다양한, 혼종된’이라는 의미를 가진 hetero와 장소라는 의미의 topos/topia의 합성어로서 미셸 푸코가 본격적으로 주체화한 개념이다(배정희, 2009). 푸코는 권력의 공간, 모순적 공간에 대항하는 대안 공간으로서 헤테로토피아를 제안하는데, 이는 인지적 직관으로 채워진 유토피아와 같은 공간이 아니라¹⁷⁾

17) 배정희(2009)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헤테로토피아의 이해에서 유토피아의 존재와 의미는 전제조건과 같다. 이상 세계에는 존재하지만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유토피아라 한다면, 헤테로토피아는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나 결코 장소성을 가지지 못하는, ‘장소 밖’의 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유토피아와 헤테로토피아는 ‘거울이미지’의 관계를 가진다. 결국 근대에서 유토피아가 역

사회의 지배질서를 교란시키며 어딘가에 존재하는 현실감을 지닌 장소로서 일상생활로부터 일탈된 타자적 공간을 생산하는 잠재성이다(정병언, 2007).¹⁸⁾ 요컨대 타자의 공간이자 주변적 공간, 일탈의 공간, 저항의 공간, 대안적 공간이 바로 헤테로토피아이며, ‘다양성’과 ‘유동성’의 가치를 ‘보편적’으로 내세우는, 하지만 비현실적 유토피아와는 다른 개념이 바로 헤테로토피아다. 결국 ‘도시에 대한 권리’를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공공공간은 헤테로토피아의 모습이자, 반대로 헤테로토피아적 공공공간을 위해서는 ‘도시에 대한 권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둘은 ‘차이에 대한 인정’이라는 지점에서 서로 결합된다.

헤테로토피아는 더 이상 ‘다름’을 ‘틀림’으로 치환하지 않는다. ‘차이’를 ‘차별’적으로 용인하지도 않는다. 닫혀있는 근대적 사유와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혼종적(hybrid) 성격의 공공공간을 추구한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체제와 결합한 주체들만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노숙인과 같이 시스템에 부합하지 않는 소수자 까지도 인정하고 포함하는 개념으로서의 공공성, 공공공간을 지향한다. 결국 헤테로토피아적 도시공간을 지향하는 ‘도시에 대한 권리’는 공공공간의 거리노숙인에게 가장 절실한, 바로 그것이다.

3) 거리노숙인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위하여: 연대의 미학

개념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대한 권리’를 정형화된 프레임으로 드러내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또한 ‘차이를 드러낼 권리의 보장’과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수준의 차이’ 사이에는 치열한 사회적

사의 발전으로 시간화된 이상세계라면, 헤테로토피아는 재공간화된 유토피아인 것이다.

18) Foucault에 의하면 헤테로토피아는 “그 기능면에 있어서 기존의 사회공간과는 다르며 심지어 대립적이기조차 한 특이한 공간”이고, 또한 이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공간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것들의 합법성을 교란시키는 기묘한 장소이기도 하다(정병언, 2007).

합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실천적 차원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쟁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과 전략들이 동원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차이의 경계를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필자는 ‘연대(solidarity)’를 ‘도시에 대한 권리’의 주효한 도구이자 차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요 기제로 제안한다. ‘동일성의 정치’를 강조하는 공동체 개념에 반대했던 풀뿌리 민주주의론자 아이리스 영의 논의를 토대로 연대의 미학을 조명해 보자.

아이리스 영은 공동체와 차이에 대해 “공동체의 이상은 데리다가 언급하는 존재의 형이상학(the metaphysics of presence)과 아도르노가 언급하는 (차이를 부정하는 형이상학인) 동일성의 논리(the logic of identity)와 관련이 있다. 공동체의 이상은 주체들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또 그들은 주체들 사이의 차이를 부정한다”(Young, 1990a)고 주장하며 공동체주의를 반대한다. 즉, 차이보다 통일을 우선시하는 공동체의 이상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인데, 그녀는 공동체의 대안으로 차이의 정치학을 제안하며 통일성을 ‘해체(deconstruction)’한다. 요컨대 공공공간(혹은 공공영역)이 공동체를 표방하며 추구하는 동일성의 정치는 차이의 정치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요다. 특히 그녀는 “억압¹⁹⁾된 집단이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긍정적 의미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이 그 자체를 명명할 힘과 권력을 소유해야만 한다”(Young, 1990b)고 보는데, 이는 억압된 집단이 자신들의 언어로 그들의 다름과 차이를 보일 수 있도록 연대하는 집단 의식적 정치학이 필요함을 함축하고 있다. 거리노숙인의 ‘도시에 대한 권리’ 확보 가능성은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즉 공공공간의 거리노숙인들은 ‘연대’의 강화를 통해 자기학습 및 자기긍정의 과

19) 영은 전통적으로 ‘억압’이라는 용어가 피상적이거나 협소하게 이해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억압의 유형을 착취(exploit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 무력감(powerlessness), 문화적 제국주의(cultural imperialism), 폭력(violence)이라는 다섯 가지로 제시한다(Young, 1990b).

정을 거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희망’을 키울 수 있다. 다시 말해 사회적 소수자가 다수자 중심으로 구성된 공공공간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공공간을 헤테로토피아적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차이’를 자신들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때 ‘연대’는 전략적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연대란 단순히 ‘여러 사람이 뭉침’을 뜻하지 않는다. ‘분화된 연대(differentiated solidarity)’(Young, 2000)²⁰⁾라고 영이 표현했던 것처럼, “다양한(그러나 사회·문화·정치적 친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외부적 차이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유동적 집단을 이룬다”는 의미에서의 ‘연대’이며, 집단이기주의나 편견 등을 반대하는 협동의 맥락 속에서 구조화된 의미로서의 ‘연대’이다. 이 때 ‘연대’가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연대’는 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내부 정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적 합의를 구체적 수준으로 도출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영등포 일대의 노숙인들이 자체적으로 결성한 단체인 ‘해보자모임’의 경우, ‘연대’가 구체적인 일상생활 수준에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 그리고 연대의 가능성과 한계는 무엇인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해보자모임’은 영등포에서 거리와 쉼터를 오가던 노숙인들이 “노숙인끼리 도와가며 무엇이든 해보자”는 취지에서 조직한 단체다. 결성 초기에는 몸이 아파도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지 못하던 거리노숙인들을 돕는 정도의 일을 하던 이 단체는, 이제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금을 통해 좀 더 구체적 자활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그들 자신이나 그들의

20) 원래 영의 ‘분화된 연대(differentiated solidarity)’ 개념은 공동체주의의 보편성과 차이의 정치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나왔다. 즉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정치에 있어, 기존의 통합 전략들과는 다른 대안적 포섭의 모델로 제시한 개념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배제된 자들이 차이의 정치를 행사할 때 결성되는 연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 그 자체를 표현한다. 다만 그 내용과 의도에 있어, ‘소수자들이 공공공간을 전유하기 위해, 그리고 도시에 대한 권리를 추구하기 위해 결성된 연대’ 개념에도 통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여기서는 넓은 의미에서의 ‘분화된 연대’ 개념으로 사용했음을 밝힌다.

동료가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서로를 독려하면서, 그들에 대한 주류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결국 그들 스스로가 도시공간 전유의 권리를 구체적인 형태로 구성해 나가면서, 주류사회에게 그들의 목소리와 차이를 끊임없이 드러내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공공공간에서의 삶이 예전에 비해 한결 더 부드러워졌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즉 ‘해보자모임’은 ‘연대’를 통해 집단 의식을 고양시켜 내부적 정화 시스템²¹⁾을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차이’와 ‘다름’을 조직화된, 그래서 주류사회와의 소통을 한결 원활하게 해주었던 그들만의 언어(혹은 방식)로 표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원활해진 소통 체계를 통해 주류사회와의 합의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는 ‘차이를 드러내는 행위와 다른 이에

21) 이는 연대가 갖는 중요한 합의 중 하나로, 연대가 단지 특정 집단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도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즉 연대를 통해 특정 주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표면에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뿐 아니라, 연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끊임없는 문답을 통해 그들의 주장을 좀 더 매끄럽게 다듬는 과정을 동시에 갖게 된다. 따라서 과편화된 소수자들이 각자 자신의 차이를 드러낼 때 주류사회는 이를 단지 ‘듣기만 하는’ 수준에 머무르지만, 연대 내에서 지속적 문답 과정을 통해 구성된 ‘우리’,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내는 구체화된 목소리는 주류사회와의 ‘타협점’을 좀 더 찾기 쉽도록 이끈다. 이와 관련해 ‘해보자모임’의 한 운영위원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연대 이전의) 원래 우리(거리노숙인들)는 (공공공간에서 맺는 시민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들 다른 얘기를 했어. 어떤 사람은 ‘내가 여기(공공공간)에서 밥 먹고 자는데 니들(시민들)이 무슨 상관이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사회적으로 비난 받아야 될 사람인거 안다. 그러니까 나는 알아서 숨어 지내려한다’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연대 이후엔 이런 의견들이 어느 정도 모아지거든? 우리끼리 구체적으로 합의점을 찾아. 그리고 사람들(시민들)과 얘기해.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은 당신들(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되니 지양하도록 하겠소. 그러니 그렇게 좋지 않은 시선으로만 우리를 바라보진 마시오’라는 식으로. 일종의 타협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 스스로가 자존감을 찾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합의점을 끊임없이 찾게 돼. 물론 그만큼 사회와 이야기하는 부분도 더 원활해지지. 그 사람들(주류사회)도 우리에게 대한 인식을 바꾸면서, 아니 꼭 인식이 바뀌진 않더라도, 우리와 대화하는 태도를 바꾸거든. 서로를 대화가능한 상대로 인정하려 노력하는 거지. (연대) 이전처럼 끊임없이 ‘너는 너 얘기, 나는 내 얘기’식의 평행선을 달리는 건 아니라는 거야”(2011년 3월 24일 ‘해보자모임’ 운영위원 000 씨 인터뷰 내용).

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는 행동 사이의 경계'와 같이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테제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대화할 수 있었음을, 그리고 그 것이 주류사회 혹은 거리노숙인 중 어느 한쪽의 일방적 입장이 아닌 말 그대로 '합의'의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들은 때때로 내부적 진통을 겪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경우는 그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행동으로 옮길 때다. 가령 그들은 그들의 연대에 포함될 수 있는 대상을 제한한다. 즉 의견 수렴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연대 내부에서 통일된 목소리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과 상이한 시선을 갖는 자들을 종종 배제하곤 했다. 요컨대 집단 내부의 차이를 서로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임 내에서 또다시 소수자와 다수자가 나뉘게 되었던 것이며, 이는 위에서 언급했던 연대의 중요한 전제가 결여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해보자모임'은 연대라는 전략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연대를 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결국 '차이에 대한 인정'에 기반하여 '다양한 집단 간 연대'를 모색할 수 있다면, 공공공간의 거리노숙인들은 진정한 의미의 '도시에 대한 권리' 확보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 수준의 사회적 합의 역시 좀 더 실질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을 대신하여

공공공간은 결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 아니다.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공공공간은, 다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제재를 당해야만 하는 '지배의 공간'일 뿐이다. 그리고 이는 자본주의에 의해 추동되는 공공성 담론과 소수자의 사회적 위치성이 결합한 결과가 공간적으로 드러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 논의가, 40년도 넘게 지난 지금 다시 한 번 거세게 확산되고 있는 건, 아마도 현존하는 권리 담론이 소수자의 입장을 적절하게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공공공간의 소수자들에게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적절한 주거공간을 제공할 것인가”하는 문제에만 집중하고, “공공공간에서의 소수자의 삶 그 자체”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현대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것일 수도 있다.

‘도시에 대한 권리’, ‘차이에 대한 권리’, ‘헤테로토피아적 공공공간’. 이들 모두가 지향하는 궁극적 가치는 ‘상생’이다. 즉 소수자와 다수자, 약자와 강자 중 어느 누군가의 일방적 득세가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공공공간을 그리는 것이다. 결국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차이를 통해 만드는 입체적 공공공간’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소수자들이 공공공간으로부터 배제당하는 현실을 보이고, ‘도시에 대한 권리’가 어떤 유용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며, ‘연대’라는 도구를 통해 ‘도시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중용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대사회에서 공공공간의 소수자들이 겪는 다양한 차원의 배제와 포섭의 과정을 거리노숙인이라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또 그러한 배제와 포섭의 논리에 은폐되어 있는 자본주의의 전략을 더불어 지적함으로써 공공공간의 권력성을 보이려 했다.

둘째, 기존의 권리담론이 자본주의적 권력관계와 결합함에 따라 어떤 한계를 갖는가를 밝히고, ‘도시에 대한 권리’ 담론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고자 했다. 그리고 ‘전유’와 ‘차이’라는 개념을 통해 ‘도시에 대한 권리’의 유용함을 보이려 했다.

셋째, ‘연대’라는 전략적 도구를 통해 ‘도시에 대한 권리’가 단순히 이론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방 프로젝트로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려고 했다. 특히 도시공간의 ‘전유’, 혹은 ‘연대’라는 개념은 그저 상식적 수준의 논의에 머무를 수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결합 및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밝힘으로써 실천적 의의를 찾고자 했다. 가령 소수자들의 연대는 단지 여럿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음으로써

좀 더 파괴력을 갖을 뿐이라는 기존의 논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연대를 통해 드러날 수 있는 ‘차이’가 구체적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도 있음을 보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전제되어야 하는가를 더불어 밝힘으로써 ‘연대’의 가치, 그리고 ‘연대’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공공간에는 ‘도시에 대한 권리’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수많은 소수자들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는 ‘해보자모임’과 같이 연대를 통해 ‘도시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려는 사회운동들이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지배의 공간’ 곳곳에 존재하는 균열지점을 통해 ‘차이’가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비록 본 연구는 공공공간을 살아가는 소수자의 권리 담론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관해 시론 수준의 논의를 하는데 그치고 있지만, 후속 연구를 통해 ‘도시에 대한 권리’ 담론을 좀 더 확장시키고 구체화시킨다면, 그리고 그 결과가 실제 사회운동을 지지할 수 있는 개념적 근거가 됨과 동시에 사회운동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입체적 공공공간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 Abstract

A Preliminary Study on Minority Rights to Public Space:
Focusing on ‘the right to the city’ for rough sleepers

Kim, Jun-Ho

Public space and publicness discourse are thoroughly derived from majority. Thus the social minority has been constantly excluded from public space. However, existing rights discourses such as human rights, citizenship and housing rights do not properly address this problem.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subject of exercising the rights does not include the minority, and the narrow view of the rights overlooks the appropriation for public space. A new paradigm of the rights discourse is required, and this paper alternatively suggests ‘the right to the city’. ‘The right to the city’ based on ‘the recognition of difference’ could product a hybrid public space, not a substitute ‘wrong’ for ‘difference’. This paper identifies that the minority in public space can obtain ‘the right to the city’ more effectively by the strategic tools for ‘solidarity’.

Keywords: public space, publicness, minority, rough sleepers, the right to the city

참고문헌

- 강현수. 2009.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 및 관련 실천 운동의 흐름」. 《공간과 사회》, 32호.
- 김남주. 2000. 「차이의 공간을 꿈꾸며: 『공간의 생산』과 실천」. 《공간과 사회》, 14호.
- 김준호. 2010a. 「거리노숙인이 생산하는 ‘차이의 공간’에 대한 연구: 서울역 거리노숙인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10b. 「공공공간은 입체적이어야 한다」. 《진보북덕방》, 26호.
- 김하수·조태린. 2008. 「한국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접근」. 《사회언어학》, 16권 1호.
- 김홍수영. 2005a. 「시민성을 기준으로 조명한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경제와 사회》, 65호.
- _____. 2005b. 「두 도시 이야기: 노숙인을 통해 바라본 도시공간」. 《아세아연구》, 120호.
- 남기철. 2009a. 「늘어가는 노숙인: 가혹한 의자 뺏기 놀이」. 《월간 복지동향》, 124호.
- _____. 2009b. 『노숙인 복지론』. 집문당.
- 르페브르, 앙리. 2005. 『현대세계의 일상성』. 박정자 역. 기과랑.
- 문성훈. 2005. 「소수자 등장과 사회적 인정 질서의 이중성」. 《사회와 철학》, 9호.
- 발렌타인, 질. 2009. 『사회지리학』. 박경환 역. 논형.
- 배정희. 2009. 「카프카와 혼종공간의 내러티브: ‘국도 위의 아이들’과 헤테로토피아」. 《카프카연구》, 22호.
- 백완기. 2007. 「한국행정과 공공성」.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8권 2호.
- 윤수중. 2005. 「소수자 운동의 특성과 사회운동의 방향」. 《경제와 사회》, 67호.
- _____. 2009. 「인권과 소수자, 그리고 욕망의 정치」. 《진보평론》, 42호.
- 윤인진·이진복. 2006. 「소수자의 사회적 배제와 사회통합의 과제: 북한이주민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7권 1호.
- 윤해동. 2010. 「식민지근대와 공공성: 변용하는 공공성의 지평」. 《사이》, 8호.
- 이승훈. 2010. 「공공 영역과 ‘시민됨’의 문화적 조건」. 《사회이론》, 37호.
- 이주하. 2010. 「민주주의의 다양성과 공공성: 레짐이론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8권 2호.
- 장미경. 2005. 「한국사회 소수자와 시민권의 정치」. 《한국사회학》, 39집 6호.
- 전영평. 2006. 「한국의 소수자 문제와 소수자 정책 연구 관점: 행정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전영평. 2009. 「한국 소수자 정책의 지형: 정책상황의 유형화와 사례」. 《한국행정은

집», 21권 3호.

정규식. 2009. 「노숙인의 정치·경제·사회적 재해석과 노숙인 운동에 관한 연구: 추방된 자들의 전복적 주체화」.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병언. 2007. 「저항적 여성공간으로서의 헤테로토피아: 마샤 노먼의 Getting Out」. 《현대영미드라마》, 20권 3호.

하버마스, 위르겐. 2001. 『공론장의 구조변동: 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 한승완 역. 나남.

Johnsen, S., Cloke, P., May, J. 2005. "Day centres for homeless people: spaces of care of fear?" *Social and Cultural Geography*, 6(6).

Lefebvre, H. 1996. *Writings on Cities* Eleonore Kofman and Elizabeth Lebas (trans. & eds.). Oxford: Blackwell.

Mitchell, D. 2003. *The Right to the City: Social Justice and the Fight for Public Spac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Purcell, M. 2002. "Excavating Lefebvre: The right to the city and its urban politics of the inhabitant." *Geojournal*, 58.

_____. 2003. "Citizenship and the right to the global city: reimagining the capitalist world order."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7(3).

Young, I. M. 1990a. "The ideal of community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Nicholson, L. J. (ed.). *Feminism/Postmodernism* London: Routledge.

_____. 1990b.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_____. 2000. *Inclusion and Democracy*. Oxford University Press.